

## 학 칙

**제25조(평가시험)** ① 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경우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학점을 미취득(F 또는 NP)으로 처리한다. 단, 졸업예정자의 재학 중 취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, 공무, 질병, 출산, 사망 등으로 인한 공결인정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.(개정 2016.8.29., 2021.3.1)

③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(신설 2016.8.29)

④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(개정 2016.8.29., 2021.3.1)

⑤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시험은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.(신설 2014.3.1, 개정 2016.8.29)

## 학칙 시행세칙

**제30조(공결인정)** ① 「학칙」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결석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 및 학과장(전공주임)의 확인을 거쳐 공결인정을 받을 수 있다. (개정 2015.3.1, 2015.6.19, 2016.8.29, 2017.3.1, 2017.8.1., 2018.2.1., 2019.3.1., 2020.8.31., 2021.3.1.)

결석사유	증빙서류	공결인정일수	유의사항
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	관련 공문서	해당일	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경우 학점 미부여(F 또는 NP)
징병검사	관련 공문서	검사당일+2일 이내 (원거리)	
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기간	관련 공문서	해당일	
본인의 결혼	청첩장	7일	
배우자의 사망, 본인(배우자)의 부모 사망, 자녀 및 형제자매의 사망	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	5일	
본인(배우자)의 (외)조부모 사망	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	3일	
본인의 질병(사고)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(법정 전염병 포함)	입퇴원확인서 또는 의료기관진단서	14일 이내	
본인의 출산	의료기관진단서	20일	
배우자의 출산	의료기관진단서	5일	
졸업예정자의 재학 중 취업	취업증빙서류	해당일	
기타 학교에서 인정한 기간	관련 공문서	해당일	

②공결인정 시수는 결석시수를 포함하여 강좌당 총 수업시수의 1/4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졸업예정자의 재학 중 취업은 예외로 한다.

제34조(성적평가기준) ①성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,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단, 국가재난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(개정 2013.3.1, 2015.6.19, 2017.3.1., 2017.12.1., 2020.3.1., 2020.8.31., 2021.3.1.)

구분	평가방법						
	역량기반 교과목	역량평가				재평가가점	출석
1차		2차	...	n차			
80%					20%	100%	
이론과목	중간고사	기말고사		실험·실습	과제물	출석	계
	60~80%			-	0~20%	20%	100%
실습과목	60~80%				0~20%	20%	100%
NCS/YCS 교과목	직무수행능력평가				재평가가점	출석	계
	1차	2차	...	n차			
	80%					20%	100%

※ 역량기반 교과목의 경우, 향상교육을 이수하여 취득한 차수별 재평가 가점을 합산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 단, 재평가 가점을 포함한 차수별 역량평가 점수는 각각의 차수별 배점의 70%를 넘을 수 없다.

※ 이론과목, 실습과목, NCS/YCS 교과목은 2020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에 한해 적용한다.

※ NCS/YCS 교과목의 경우, 재평가 가점을 포함한 최종 성적점수(출석점수 포함)는 70점을 넘을 수 없다.

②실험·실습·실기교과인 경우 시험을 부과하지 않고 평소의 실제성적(평가표)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(개정 2013.3.1)

③역량기반 교과목과 NCS/YCS 교과목의 평가는 출석, 역량평가 점수 및 출석, 직무능력평가 점수 등을 종합하여 각각 과정형 형성평가를 실시하되,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(신설 2015.6.19, 개정 2017.3.1., 2017.12.1., 2020.3.1.)

## 성적평가 시행세칙

제2조(평가방법) ①성적평가는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, 출석, 평소 학습성적, 과제 및 시험성적 등 (역량기반 교과목 및 NCS/YCS 교과목의 경우에는 출석, 역량평가 점수 또는 직무능력평가 점수 등)을 종합하여 평가하며,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(역량기반 교과목 및 NCS/YCS 교과목의 경우 평가계획서)를 통해 성적평가 방법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6.19, 2017.3.1, 2017.8.28., 2019.3.1., 2020.3.1.)

⑤출석점수는 <별표1>의 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.(개정 2016.8.29)

1. 출석점수 =  $\frac{\text{출석시간수}}{\text{총수업시간수}} \times \text{출석 배점}$

2. 출석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성적에 반영한다.

3. 수업시간별 지각 또는 조퇴는 3회당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한다.